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 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인간 · 지역간 ·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인슐레이션코리아 드림재단(The Insulation Korea Dream Foundation)이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

제 4 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 지원 사업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5 조(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성별과 연령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재산 및 회계

제 6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 7 조 제 3 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 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까지로 한다.

제 13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 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3.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6 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 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 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임 원

제 17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 1 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8 조(상임이사)

① 제 5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 1 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9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1 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7 조의 이사 현원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의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2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3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4 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제 1 항의 지명자가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이 사 회

제 26 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조직과 운영과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 27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와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와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8 조(의결제척사유)

이사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 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 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제 30 조(이사회와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보칙

제 33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35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6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7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 정진숙

이사 - 손용석, 지남용, 지일진, 이충섭

감사 - 장대련, 고광례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6.)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 38조 (홈페이지 관련)

인술레이션코리아 드림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21년 10월 8일 개정